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4
----------	-------

제출년월일 : 2013.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징수 기준 중 일부를 조정하고 부대시설(장비)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등의 할인규정 마련하였고, 기타 사용료의 소비자 분쟁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 규정 세분화(안 제13조제2항)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액, 3일 전까지 75퍼센트, 1일 전까지는 50퍼센트를 반환하도록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세분화
- ※ 소비자 이익을 우선토록 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사항 반영)

나. 강습료 등의 반환 규정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다. 사용료의 할인 대상자 추가 및 할인을 개정(안 제13조의3제1항)

- 저소득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라.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자 중 특정인에 대한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 삭제(안 제15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를 삭제
- 마.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조정(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 사용료의 징수기준 시간과 상한액을 일부 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3. 10. 10. ~ 10. 30 (제출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습료 등의 반환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일치시켰으므로 준수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함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지역경제과의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 : 원안 가결
 - 보충설명이 필요했던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사

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외부위원들을 대상으로 보충설명을 실시한 결과 원안에 동의함

- 5)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2013.11.5)결과 : 원안의결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 7)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마포아트센터”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서울특별시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센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를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강습료”는 센터에서 여는”을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대흥동 30번지 3호”를 “대흥로 20길 28(대흥동)”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중”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에 관하여”를 “위탁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를 “구청장은”으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의하여”를 “따라 수탁자에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이상 경합시”를 “2 이상 경합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06시에서 22시까지”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경우는 06시에서 24시까지”를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에”를 “제9조제1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나의”를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이용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30일 미만의”를 “시설의 30일 미만”으로, “이상의”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 조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2호”로, “별표 제2호에 정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문화·체육 프로그램”

으로,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사용개시일 10일전”을 “개시일 1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5퍼센트 반환
 -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제13조의2제2항 중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각호”를 “각 호”로, “사용료를 할인한다”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등록자
2.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경우에”를 “경우에도”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불명한 자”를 “불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된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일내”를 “기일 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사전허가”를 “사전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후 사용자는”을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한 후”로, “원상복구 하여야”를 “원상복구하여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구소속 공무원”을 “구소속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0조 중 “법률”을 “법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의 사용료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 이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마포아트센터 사용료(대관료,강습료,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고,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기본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한다.
- (2)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퍼센트를 할증 적용한다.
- (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사용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4)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
- (5) 주차장의 주차료는 개별기준에 따른다.
- (6) 개별기준 중 (1)부터 (6)까지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 (7)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하며, 오후 10시 이후의 철야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단,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
- (8) 평일 낮 공연은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할인 적용한다.
단, 낮 공연은 오후 4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9)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자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은행영업일 기준) 센터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10) 기본대관료 할인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
 - (나)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1회 공연 추가 시 기본대관료는 20퍼센트 할인 적용한다.
 - (다)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30퍼센트를 할인한다.
 - (라) 2개 항목 이상 할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개별기준

(1) 대공연장(아트홀 맥) 사용료

(단위 : 원/1회)

구 분	클래식,국악	연극,무용,재즈, 오페라	뮤지컬,대중공연	방송(촬영)	행사
기본대관료	5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2) 소공연장(플레이 맥) 사용료

(단위 : 원/1회)

구 분	클래식,국악	연극,무용,재즈, 오페라	뮤지컬,대중공연	방송(촬영)	행사
기본대관료	200,000	250,000	300,000	400,000	500,000

(3) 삭제

(4)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분	기본사용료
대관료	50,000원/1시간

(5) 소체육관 사용료

구분	사용료
대관료	10,000원/1시간

(6) 그 밖의 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료
다목적홀	30,000원/1시간
연습실	15,000원/1시간
전시실(갤러리 맥)	15,000원/1시간

(7) 주차료

구 분		주 차 료
일 반 차 량		- 기본 30분 1,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관람 차량		- 4시간 3,000원 - 추가 10분당 500원
공연장 대관차량 (대관 기간중)	대극장	- 차량 5대까지 무료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000원 판매
	소극장	- 차량 3대까지 무료 - 1일주차권 12시간 기준 5,000원 판매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 회원(1일회원 포함) 프로그램 이용일 3시간 무료 (2개 이상 프로그램 회원 4시간 무료) - 추가 10분당 500원
그 밖의 차량		-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주차 확인”에 한하여 무료 - 업무용차량(수강신청 및 방문 등)은 “주차확인”에 한하 여 1시간 면제(추가 10분당 500원, 1시간 초과시 “주차 재확인”차량 면제) -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 비고

1. 시간제에 의한 주차요금의 상한액은 1일 15,000원으로 한다.
2. 10분 미만의 시간은 10분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 할인(면제) 대상차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면제)한다.
4. 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5.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 따라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문화 · 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일반기준

- (1)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2) 나목의 문화강좌 ·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

나. 개별기준

(1) 문화강좌 ·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용료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3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인	30,000 ~ 200,000
	중·고생이하	25,000 ~ 200,000
유아 · 초등생 교육프로그램		25,000 ~ 150,000
유아체능단		60,000 ~ 340,000
기타		· 위 사용료는 월 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부터 주 5회까지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단위 : 원/월)

구분	강습료	자유이용		그룹지도
		정기	1일입장	
사용료	25,000 ~ 80,000	25,000 ~ 70,000	1,500 ~ 4,500	100,000 ~ 200,000
기타	· 성인 월 강습회원은 해당 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단, 일요일은 제외) ·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퍼센트 할증			

(나)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일반	중·고생	그룹지도	개인지도
사용료	35,000 ~ 50,000	35,000	100,000 ~ 200,000	30,000 (1시간/회)
기타	·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1일이용		비고
				기본 1박스	추가 1박스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 150,000 (1시간/회)	4,000	2,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타	· 초등생/유아 강습은 주2~5회로 하며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이용 기준임 · 공휴일 1일이용은 20퍼센트 할증					

3. 독서실

구분	성인	중고생
월 사용료	30,000원	15,000원
1일사용료	1,000원	5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u>마포아트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서울특별시마포구민</u>(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u>센터</u>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사용자”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p>	<p>제1조(목적) ----- ----- ----- -- <u>마포아트센터</u>----- ----- 징수에 ----- ----- <u>서울특별시 마포구민</u>----- ----- -----.</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u>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u>(이하 “센터”라 한다)- ----- -----.</p> <p>2. (현행과 같음)</p> <p>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 -----.</p>

는 자를 말한다.

4. (생략)

5. “강습료”는 센터에서 여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 8. (생략)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0번지 3호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

4. (현행과 같음)

5. “강습료”란 센터에서 운영 하는 -----

-----.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위치) -----
----- 대흥로 20길 28
(대흥동)-----.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

② ----- 규정에도 -----

-----.

1. -----

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탁에

제5조(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 등) ① 범위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정하는 따라 수탁자에게

제6조(운영위원회) ①·② (생략)

제6조(운영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③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
청장은 시설 사용을 원하는 자
가 2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 허가한다.

1. (생략)

2.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문화예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경기대회 및 체
육행사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06시에서 22시까지
로 하되, 독서실의 경우는 06시
에서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

예산의 범위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2 이상 경합 시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제9조(사용시간) ①

오전 6시부터 오후 1

0시까지 사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

까지.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의 개방)

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9조에 명시한 사용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제11조(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 ① 구청장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30일 미만의 사용의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거나 30일 이상의 사용의 경우에는 임대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 제9조제1항
에서 -----

----- 하나에 해당하는

----- 사용자-----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관의 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 ① ----- 시설의 30일 미만 -----
-----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 각 호-----

1.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 (생략)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의 보호나 지원을 받는 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식

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이 조례에서 수강료의 범위만 정한 별표 제2호에 정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차액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2호----- 문화·체육 프로그램-----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개시일 10일 전-----

에 대하여 행사종료 후 3일 이
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
게 된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
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한 때 -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3조의2(강습료등의 납부 및 반

②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
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
거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
납부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
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
료의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
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
료의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
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
료의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제13조의2(강습료등의 납부 및 반

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강습료 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③ 강습료등의 반환은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상 장기등록회원의 경우에는 매월 도래하는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개시일 이후 등록한 회원의 강습료등 반환의 경우에는 기존 회원과 동일하게 개시일부터 이용한 것으로 보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생략)

제13조의3(할인)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공연업, 체육시설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준하여 -----.

<삭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할인) ① -----
----- 규정에도 -----
---- 각 호-----

경우에는 사용료를 할인한다.

1. 문화 3강좌 또는 체육 3종목 이상 동시 등록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2. 1개월 단위 강좌 3개월분 동시등록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문화강좌 3개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3개 이상 동시 등록자

2. 1개월 단위 강좌 또는 프로그램 3개월분 동시등록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신 설>

② (생 략)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이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의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계약에 의해 배분한다.

제15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9.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우에도 -----
-- 해당 관람수입 총액의 20퍼
센트-----

④ -----

-- 따라 -----.

제15조(입장제한) -----

자에 대하여 센터 각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자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1. 2. (생략)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② (생략)

사람에게는 -----

-----.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 불명한 사람
3. ----- 휴대한 사람
4. -----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
----- 해당하는 경우-----

-----.

1. 2. (현행과 같음)
3. ----- 기일 내-----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후 사용자는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구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적용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 사용기간 중 -----

----- 사전 허가 -----

②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한 후 ----- 원상복구 하여야 -----

제19조(지도·감독) ① ----- 관계 공무원 -----

----- 구 소속공무원 -----

----- 그 밖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다른 조례 등의 적용) ---

--- 법령 -----

<p>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u>시행에</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시행규칙) ----- <u>시행에</u> ----- -.</p>
--	---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별표> [제12조제1항 관련]</p> <p>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개별기준의 기본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본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p> <p>(2) 토·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에 10%를 할증 적용한다.</p> <p>(3)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4) 1회의 사용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50%를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시간으로 간주한다.</p> <p>(5) 생략</p> <p>(6) 나목 개별기준 중 (1) 내지 (6)의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한다.</p> <p>(7) 리허설, 준비, 철수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며, 22시 이후의 철야 대관은 기본대관료의 100%를 적용한다. 단, 공연 종료 후 공연 대관 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할 경우에는 추가 대관료를 받지 아니한다.</p> <p>(8) 평일 낮 공연에 한해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0분의 20을 할인 적용한다. 단, 낮 공연은 16시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p> <p>(9) 생략</p>	<p><별표> [제12조제1항 관련]</p> <p>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 -----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의 기본사용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하고, 종합체육관, 소체육관 및 기타 시설의 기본사용시간은 1회 1시간으로 --.</p> <p>(2) ----- ----- 10퍼센트 -----.</p> <p>(3) ----- ----- 기본사용시간을 ----- -----.</p> <p>(4) ----- ----- 50퍼센트 ----- -----.</p> <p>(5) (현행과 같음)</p> <p>(6) 개별기준----- (1)부터 (6)까지의 ----- -----.</p> <p>(7) ----- ----- 50퍼센트를 -----, 오후 10시 ----- ----- 100퍼센트를 -----.</p> <p>(8) ----- 공연은 ----- ----- 20퍼센트를 ----- ----- 오후 4시 ----- -----.</p> <p>(9) (현행과 같음)</p>

(10) 생략

(가) 장기대관(10일 이상의 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 안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

(나)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1회 공연 추가 시 기본대관료는 20% 할인 적용한다.

(다)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70% 할인 적용한다.

(라) 생략

(11) 신설

나. 개별기준

(3)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품목	기준	사용료	비 고
악기	Steinway D-274	회	70,000	조율비 별도(지정조율사)
	삼익 SDG-275E	회	30,000	조율비 별도(지정조율사)
	소형 크렌도피아노	회	20,000	조율비 별도(지정조율사)
부대	음향반사판	일	50,000	
	댄스 플로어	일	100,000	테이프및선시/철수대관자부담
	밧마	일	50,000	설치/철수 대관자 부담
	주	일 m ²	1,000	설치/철수 대관자 부담
조명	오케스트라 리트	회	30,000	
	Follow spot	일대	30,000	조작자 별도
	로그머신	화대	20,000	포기액 포함
	무빙라이트	일대	40,000	
	효과조명기기	일대	10,000	
	source four	일대	2,000	
	Par64	일대	1,000	기본 10개 제공
음향	Par46	일대	5,000	
	음향콘솔 I13000	일식	300,000	기본 10KW급은 무료제공
	대용량스피커	일개	25,000	기본 2개 제공
	모니터스피커	일개	2,000	기본 3개 제공
	마이 크	일개	2,000	기본 3개 제공
	콘덴서	일개	6,000	
	부선마이크	일/채널	20,000	전원지및소모품 대관자 부담
영상	기타2tr	회	20,000	저장미디어 대관자 부담
	멀터tr	회/tr	6,000	저장미디어 대관자 부담
	편집 및 마스터링	50분	100,000	저장미디어 대관자 부담
인력	녹화 HD	회	60,000	저장미디어 대관자 부담
	녹화 VHS	회	20,000	저장미디어 대관자 부담
지원	공연진행	화인	50,000	3시간 1회
	인력지원	양인	80,000	8시간기준 (추가시간당 15,000원)
기타	대공연장 냉/난방	1회	80,000	3시간 1회
	소공연장 냉/난방	1회	30,000	3시간 1회

(10) (현행과 같음)

(가) ----- 10퍼센트 범위에서 -----.

(나) ----- 20퍼센트 -----.

(다)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마포구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본 대관료에 30퍼센트를 할인한다.

(라) (현행과 같음)

(11) 부대시설 사용료와 개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개별기준

(3) <삭제>

(4)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고
대 관 료	120,000원/1회	
음 할 잡 비	10,000원/1회	
조 명 시 설	30,000원/1회	
냉 · 난 방	30,000원/1시간	

(5) 소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비고
대 관 료	30,000원/1회	
냉 · 난 방	10,000원/1시간	

(6) 기타 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비고
다목적홀	80,000원	1회 3시간 기준(냉난방료 1회 20,000원 추가징수)
연습실	40,000원	1회 3시간 기준(냉난방료 1회 20,000원 추가징수)
전시실(갤러리맥)	120,000원	1회 9시간 기준(냉난방료 1회 20,000원 추가징수)

(7) 생략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생략)

나. 개별기준

(1)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용료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 ~ 3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 인	20,000 ~ 50,000
	어 린 이	15,000 ~ 40,000
전산 및 기타 교육	20,000 ~ 43,000	
유 아 · 초 등 생 교육 프로그램	25,000 ~ 150,000	
유 아 체 능 단	100,000 ~ 20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 내지 주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4) 종합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대관료	50,000원/1시간

(5) 소체육관 사용료

구 분	기본사용료
대관료	10,000원/1시간

(6)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구 분	사용료
다목적홀	30,000원/1시간
연습실	15,000원/1시간
전시실(갤러리맥)	15,000원/1시간

(7) (현행과 같음)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현행과 같음)

나. 개별기준

(1)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용료	
문화강좌프로그램	10,000~30,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성 인	30,000~200,000
	중·고생이하	25,000~200,000
유 아 · 초 등 생 교육 프로그램	25,000~150,000	
유 아 체 능 단	60,000~34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1회부터 주5회까지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단위 : 원/월)

구 분	강습료	자유이용		개인지도
		정기	1회	
사용료	25,000~ 80,000	25,000~ 70,000	1,300~ 3,000	100,000~ 150,000
기 타	· 1회 입장료는 1일 1시간 기준임 · 성인 월강습회원은 해당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일요일은 제외) · 일요일 및 공휴일의 일일 자유이용은 20% 할증			

(나) 헬스

(단위 : 원/월)

구 분	일 반	중·고 생	비 고
사용료	35,000~ 50,000	35,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 분	정기(월)			일일이용		비 고
	일반	중·고 생	초등생/유아 (강습료 포함)	기본 1박스	추가 박스당	
사용료	80,000	75,000	80,000~ 100,000	4,000	2,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 타	· 초등생/유아 강습은 주2~5회로 하며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이용 기준임 · 신실					

3. 생략

(2) 체육시설 사용료

(가) 수영

(단위 : 원/월)

구 분	강습료	자유이용		그룹지도
		정기	1일입장	
사용료	25,000~ 80,000	25,000~ 70,000	1,500~ 4,500	100,000~ 200,000
기 타	· 성인 월강습회원은 해당월에 월 2회 자유수영시간 무료이용 (단, 일요일은 제외) · 일요일 및 공휴일의 1일 자유이용은 20퍼센트 할증			

(나) 헬스

(단위 : 원/월)

구 분	일 반	중·고 생	그룹지도	개인지도
사용료	35,000~ 50,000	35,000	100,000~ 200,000	30,000 (1시간/회)
기 타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다)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 분	정기	골프 아카데미	개인지도	일일이용		비고
				기본 1 박스	추가 1박스 당	
사용료	55,000 ~ 100,000	30,000 ~ 100,000	100,000 ~ 150,000 (1시간/1회)	4,000	2,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 타	· 초등생/유아 강습은 주2~5회로 하며 1시간 강습, 1시간 자유이용 기준임 · 1일이용은 일요일 및 공휴일은 20%할증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문화관광과 신권식
연 락 처	02-3153-8353